

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89
----------	-----

2018년 12월 17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년 10월 17일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
2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29일
3. 상정일자 : 제284회 정례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18년 12월 17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이영실 의원)

1. 제안이유

- 가.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는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만으로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음.
- 나. 이에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:

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타 사항 : 없음.

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1 제안 취지

-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는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만으로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어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제안된 안임.

2 개정안 내용 검토

- 개정안은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는 안으로 비상계획에는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계획의 적용범위,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·교육,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,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·장비등의 동원방법, 화학사고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·복구 계획,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1회이상 이 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- 관련하여 상위법인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서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것임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7조의2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

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·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·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음.

-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. 그러나 매해 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대비훈련을 하는 것은 시장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.

3 개정안의 필요성

-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는 구미 제4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화학제품 생산업체 H사 에서 플루오린화 수소 가스가 유출되어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공장 일대의 주민과 동·식물들에 대해 엄청난 피해를 준 바 있음. 관련하여 공장 내의 노동자 5명이 사망하였고 18명이 부상을 당한바 있으며 불산 가스 누출 이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단지 인근 지역까지 가스가 퍼지면서 농작물이 죽고 가축이 가스 중독 증상을 보이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입힌 바 있음.
- 화학물질의 유출은 산업안전에서의 측면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주민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으며 사고 후 대응에서도 피해예측과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대책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¹⁾. 이러한 이유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

1) 주현수·이영수·임오정·유정민(2013) '화학물질 누출사고의 위해성 평가를 통한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

동 조례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
4 종합의견

- 연합뉴스의 2018년 12월3일자 보도에 따르면 흡입 시 신체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·가스 누출사고가 지난 한 달 동안에만 6건에 달하는 등 자주 발생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고 있음. 해당 기사에서 전문가는 화학물질누출 사고 시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고 2차 피해로 이어질 경우 수습이 어렵다는 점에서 예방 활동과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2012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 사고 때는 5명이 숨지고, 1만2천명 주민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바 있는 등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동 조례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
발 의 자 : 이영실, 이정인, 오현정,
김춘례, 이병도, 봉양순,
권순선, 김용연, 강동길,
이호대, 김경우, 경만선,
이광호, 김화숙, 이승미,
김호평, 노식래, 홍성룡,
황인구, 박순규, 박상구,
송명화, 문병훈, 박기재,
이은주, 김혜련, 서운기,
김동식, 김소양 의원(29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는 환경보전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만으로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음.
- 이에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)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(이하 “비상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계획의 적용범위
2.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·교육
3.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
4.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·장비등의 동원방법
5. 화학사고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·복구 계획
6.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7조의2(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)</u></p> <p><u>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(이하 “비상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계획의 적용범위</u> <u>2.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·교육</u> <u>3.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</u> <u>4.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·장비등의 동원방법</u> <u>5. 화학사고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·복구 계획</u> <u>6.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 <p><u>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</u></p>

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
수정할 수 있다.